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3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2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3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	제2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,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(법 제12조제2항제6 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 또는 법 제12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 융투자업자(이하 “외국 금융투 자업자”라 한다)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 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「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(이하 “금융감 독원”이라 한다) 등(외국 금융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 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 함한다)에 의한 조사·검사 등 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 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	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의2(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 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 략) 1. ~ 2. (생략) 3.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 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 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 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 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 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	제2조의2(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 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 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	제3조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,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(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)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 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등록검토키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,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,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(이하 “외국 투	제4조(등록검토키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자자문업자”라 한다)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(이하 “외국 투자일임업자”라 한다)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(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)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</u>, <u>중대범죄 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1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	제11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

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”라 한다)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 (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)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4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,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	제24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

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 집합투자업자”라 한다)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(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)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4조의2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	제34조의2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

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4조의3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,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제34조의3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35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. ~ 3. (생략)	제35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2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	제36조의2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

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6조의3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제36조의3(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7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	제37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

1.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. ~ 3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생략) 1.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	제38조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

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. ~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40조(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제40조(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1조(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생략)	제41조(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생략) 3.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<u>검찰청</u>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	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